

---

# 외국인투자 관련 관세정책 동향

## [2022년 달라지는 관세행정]

---

2022. 7.

본 자료는 외국인투자자 및 납세자 등의 권익보호 및 편의 증진을 위해 2022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개정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한 것입니다.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KOTRA 종합행정지원센터 투자종합상담실 관세청 파견관(☎ 02-3497-1061) 및 각 장에 표시된 업무 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
# 목 차

①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제도 개선	p.2
②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운임 등의 범위 개선	p.4
③ 정부용품 등의 면세대상 명확화	p.5
④ 안전성검사 결과에 따른 통관보류 근거규정 신설	p.6
⑤ 보세판매장의 내국인 판매한도 폐지	p.7
⑥ 개인의 해외직구물품 반품 시 관세환급 절차 간소화	p.8
⑦ 기내 구입물품 등의 반품 시 관세환급 허용	p.9
⑧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(ACVA) 관련 가산세 감면 대상 확대	p.10
⑨ 용도세율 적용절차 개선	p.11
⑩ 소액 체납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확대	p.12
⑪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(RCEP) 발효	p.13
⑫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 활용 시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	p.14
⑬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인증수출자 인증 시 제출서류 간소화	p.15
⑭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 신청 시 사본 제출 허용	p.17
⑮ 원산지 간편인정 대상 서류 및 품목 확대	p.18
⑯ 자유무역지역 내 관세법 적용 근거 마련	p.19

# 1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제도 개선

(심사정책과, 042-481-7862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<p>□ 부가치세법시행령상 발급사유 (제72조제4항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제1호~제5호) 수리전 정정, 귀책없는 원산지 확인서류 오류, FTA가산세면제, 사전심사 결과, 사전세액심사</li> <li>• &lt; 추 가 &gt;</li> </ul> <p>□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운영지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‘경미한 과실’에 대한 발급 해석 유형 규정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공통 · 과세가격 · 품목분류 · FTA · 감면 분야별로 유형 규정</li> <li>- &lt; 추 가 &gt;</li> </ul> </li> </ul>	<p>□ 발급사유 추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&lt; 좌 동 &gt;</li> <li>• (제6호) 일부 수입신고건의 오류 (제7호) 거래가격 배제사유 인식에 상당한 지식과 주의가 요구 (제8호) 가산요소 인식에 상당한 지식과 주의가 요구</li> </ul> <p>□ 운영지침 개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해석유형 추가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&lt;좌 동&gt;</li> <li>- 분야별 총 10개 유형 추가</li> </ul> </li> </ul> <p>[공통 분야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일부 기간이나 일부 품목의 세액 오류가 발생한 경우</li> <li>• 거래가격 배제사유 인식에 상당한 지식과 주의가 요구</li> <li>• 상급기관에 질의 등 세법해석상의 의의(疑意)로 견해대립이 심한 경우</li> <li>• 감사 지적에 따라 기존 처분을 변경 또는 새로이 과세처분한 경우</li> </ul>

[과세가격 분야]

- 무상물품에 대한 통상의 주의의무
- 공제요소에 대한 통상의 주의의무
- 선행관세조사시 사실관계를 확인
- 세관장의 행정지도로 신고

[품목분류 분야]

- 기존유권해석 등을 검토하는 등 귀책이 없는 경우
- 유사물품의 해석례가 다양하여 결정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

• < 신 설 >

-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절차 신설
  - 관세조사 등 결과통지에 따라 미발급되는 경우 수입자의 요청이 있으면 납보위 심의 개최

- 
- **【기대효과】** 납세자의 재산권 보호 및 관세행정 신뢰도 제고
  - **【시행일】** '22. 2. 7. (「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지침」 개정)  
'22. 2. 15. 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 제72조제4항 개정

## ②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운임 등의 범위 개선

(심사정책과, 042-481-7767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수입항까지의 운임, 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 중 “수입자가 부담하는 비용” 가산</li> <li>●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<u>수입자가 부담하는 비용</u>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부담주체와 관계없이 “<b>실제 발생하는 비용</b>”을 가산</li> <li>●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<b><u>발생하는 비용</u></b></li> </ul>

- **【기대효과】**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운임 등의 범위를 개선하여 과세합리화
- **【시행일】** '22. 2. 15. 이후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  
(「관세법 시행령」 제20조제5항 개정)

### 3 정부용품 등의 면세대상 명확화

(통관물류정책과, 042-481-7856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<p>□ 정부용품 등의 면세(제92조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군수품 및 경호물품 조문 함께 규정</li> <li>- (제2호) 정부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군수품(정부의 위탁을 받아 정부 외의 자가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 및 국가원수의 경호용으로 사용하는 물품 (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제외)</li> </ul>	<p>□ 정부용품 면세대상 명확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군수품과 경호물품의 조문 분리</li> <li>- (제2호) 정부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군수품(정부의 위탁을 받아 정부 외의 자가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 (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제외)</li> <li>- (제2의2호) 국가원수의 경호용으로 사용하는 물품</li> </ul>

- **【기대효과】** 동일 조문에 정부가 수입하는 군수품과 경호용품을 함께 규정함에 따른 세법해석의 혼란 방지 가능  
※ 부가세법에서도 분리 규정하고 있음

- **【시행일】** '22. 1. 1. 시행(「관세법」 제92조제2의2호 신설)

#### 4 안전성검사 결과에 따른 통관보류 근거규정 신설

(수출입안전검사과, 042-481-7841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<p><input type="checkbox"/> 통관의 보류(제237조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제24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가 필요한 경우</li> <li>• &lt; 신 설 &gt;</li> </ul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안전성검사 결과 통관보류 근거 신설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&lt; 좌 동 &gt;</li> <li>• <u>제24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결과 불법·불량·유해 물품으로 확인된 경우</u></li> </ul>

○ **【기대효과】** 안전성검사 결과 불법·불량·유해물품으로 확인된 경우 통관보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여 화주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 안전성 도모

○ **【시행일】** '22. 1. 1. 시행(「관세법」 제237조제1항제4의2호 신설)

## 5 보세판매장의 내국인 판매한도 폐지

(보세산업지원과, 042-481-7637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<input type="checkbox"/> 내국인 보세판매장 판매한도 • 미화 5천 달러 이하	<input type="checkbox"/> 내국인 보세판매장 판매한도 <u>폐지</u>

- **【기대효과】** 해외소비 수요의 국내소비 전환
- **【시행일】** '22. 3. 18. 시행 (「관세법 시행규칙」 제69조의3 폐지 및 「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」 제3조, 제5조 및 제14조 개정)

## 6 개인의 해외직구물품 반품 시 관세환급 절차 간소화

(심사정책과, 042-481-7862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<p>□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(반품)되는 경우, 관세환급 절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된 경우</li> <li>- 세관장 확인을 받고 수출된 경우</li> <li>- &lt; 추 가 &gt;</li> </ul> </li> </ul>	<p>□ 대상 확대 및 절차 간소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&lt; 좌 동 &gt;</li> <li>- &lt; 좌 동 &gt;</li> <li>- 소액물품*으로 수출(반품) 후 수출 사실을 세관장에게 사후 확인**받은 경우</li> </ul> </li> </ul> <p>* 수출신고가격 '200만원 이하' 금액 규정은 시행규칙에서 규정</p> <p>** 해외운송장, 반품·환불 영수증(판매자 발행) 등 제출서류는 시행령에서 규정</p>

○ **【기대효과】** 해외직구 이용 납세자의 관세환급 편의를 제고하고, 기존 관세청 지침으로 시행해 온 사항을 법령에 명확화

○ **【시행일】** '22. 3. 18. 시행(「관세법 시행규칙」 제58조의2 신설)

## 7 기내 구입물품 등의 반품 시 관세환급 허용

(심사정책과, 042-481-7862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<p><input type="checkbox"/> 반품 시 관세 환급되는 여행자 휴대물품 범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보세판매장 구입 물품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입·출국장 면세점</li> <li>- 시내면세점</li> <li>- &lt; 추 가 &gt;</li> </ul> </li> </ul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관세환급 대상 확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&lt; 좌 동 &gt;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&lt; 좌 동 &gt;</li> <li>- &lt; 좌 동 &gt;</li> </ul> </li> <li>- 국제무역선·기 구입물품*</li> </ul> <p>* 보세판매장 및 판매자 발행 반품· 환불 영수증 등 제출서류는 시행령 에서 규정</p>

- **【기대효과】** 국제무역선·기를 이용하는 납세자의 관세환급 편의를 제고하고,  
보세판매장과의 형평성 제고
- **【시행일】** '22. 1. 1. 이후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부터 적용  
(「관세법」 제106조의2제2항 개정)

## 8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(ACVA) 관련 가산세 감면 대상 확대

(심사정책과, 042-481-7862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<input type="checkbox"/> 가산세(부족세액의 10%) 감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사전심사 결과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</li> <li>- ‘사전심사 신청 전’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 시</li> </ul>	<input type="checkbox"/> 가산세 감면 대상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&lt; 좌 동 &gt;</li> <li>- ‘사전심사 결과 통보일 전’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 시</li> </ul>

○ **【기대효과】** 자발적 세액오류 시정 유인

○ **【시행일】** '22. 1. 1. 이후 수정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 
(「관세법」 제42조의2제1항제3호 개정)

## 9 용도세율 적용절차 개선

(공정무역심사팀, 042-481-7883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<p><input type="checkbox"/> 용도세율 신청 '<u>승인</u>' 시 적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용도세율을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신청서를 세관장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</li> </ul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용도세율 '<u>신청서 제출</u>' 시 적용 가능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세관장 '<u>승인</u>' 절차 없이 신청서 제출만으로 적용가능 하도록 개선</li> </ul>

○ **【기대효과】** 신청서 제출만으로 용도세율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함으로써 납세자 편의 증진

○ **【시행일】** '22. 1. 1. 이후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  
(「관세법」 제83조제1항 개정)

## 10 소액 체납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확대

(세원심사과, 042-481-7871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<p><input type="checkbox"/> 소액 체납세액 납부지연가산세 면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100만원 미만 체납세액*에 대하여 납부지연가산세 면제**</li> </ul> <p>* 체납된 관세(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를 포함)</p> <p>** <u>일할분 가산세(日 0.025%)만 면제</u>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소액 체납세액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확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기준금액 상향 조정 : 100만원 → <u>150만원</u></li> </ul>

- **【기대효과】** 소액 체납에 대한 납세자 부담 완화
- **【시행일】** '22. 1. 1. 이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 
(「관세법」 제42조제5항 개정)

## 11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(RCEP) 발효

(국제협력총괄과, 042-481-3215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<p>□ 우리나라는 총 57개 국가와 17개의 자유무역협정 체결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칠레, 싱가포르, EFTA, 아세안, 인도, EU, 페루, 미국, 터키, 콜롬비아, 호주, 캐나다, 뉴질랜드, 베트남, 중국, 중미, 영국</li> <li>- &lt;신 규&gt;</li> </ul> </li> </ul>	<p>□ 세계 최대 Mega-FTA인 <u>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(RCEP)</u> 발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&lt;좌 동&gt;</li> <li>- &lt;좌 동&gt;</li> <li>- <u>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(RCEP)</u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(회원국) 우리나라, 브루나이, 캄보디아, 인도네시아, 라오스, 말레이시아, 미얀마, 필리핀, 싱가포르, 태국, 베트남, 호주, 중국, 일본, 뉴질랜드</li> </ul> </li> </ul>

○ **【기대효과】** 주요 교역국간 통일 원산지 규정 마련, 일본과의 신규 협정 체결 등으로 수출입기업의 자유무역협정 활용 편의 제고

○ **【시행일】** '22. 2. 1. 우리나라에 대해 발효(「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부칙)

※ 말레이시아('22.3.18 발효), 인도네시아·필리핀·미얀마(미발효)

→ 미발효 3개국의 협정 발효일\*은 관세청 FTA포털 사이트 ([www.customs.go.kr/ftafortalkor/main.do](http://www.customs.go.kr/ftafortalkor/main.do))을 통해 추후 공지 예정

\* 자국 비준 문서를 기탁처(아세안 사무총장)에게 기탁한 날 후 60일째 되는 날

## 12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 활용 시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

(국제협력총괄과, 042-481-3215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<p>□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시 원산지 증명서 제출 필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 적용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가 수입신고 수리 후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아래의 서류 제출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「관세법 시행령」 제34조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서</li> <li>- 원산지증빙서류*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원산지증명서와 그 밖에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·정보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/ul>	<p>□ 원산지정보가 전자적으로 교환되는 경우 <u>원산지증명서 제출 생략</u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&lt;좌 동&gt;</li> <li>- &lt;좌 동&gt;</li> <li>- ‘전자적 원산지 정보교환 시스템’을 통해 <u>국가간 원산지증명서의 정보가 교환*</u>된 경우에는 원산지증빙서류 중 <u>원산지증명서 제출 생략</u></li> <li>* 현재 중국(한-중 FTA,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) 및 인도네시아(한-아세안 FTA)에 대해 원산지정보 교환 중</li> </ul>

○ **【기대효과】** 협정관세 적용 시 제출 서류 간소화로 기업의 편의 제고

○ **【시행일】** '22. 1. 1. 시행(「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3항 단서 신설)

### 13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인증수출자 인증 시 제출서류 간소화

(국제협력총괄과, 042-481-3215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,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시 원산지 소명서 등 제출</li> <li>●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증명서 발급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,</li> <li>수출신고 수리필증,</li> <li>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등</li> <li>- 원산지소명서 및 입증서류</li> </ul> </li> <li>●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시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서류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서 등</li> <li>- 원산지인증 신청품목에 대한 원산지소명서 및 입증서류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<u>원산지간이확인물품</u>에 대해서는 <u>원산지소명서와 입증서류 대신 국내제조확인서</u> 제출 가능</li> <li>● &lt;좌 동&gt;</li> <li>- &lt;좌 동&gt;</li> <li>- <u>원산지간이확인물품*</u>에 해당하는 경우 <u>국내제조확인서</u>로 대체 가능</li> <li>* 관세청장이 국내에서 제조·가공한 사실만으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으로 인정하여 고시한 물품</li> <li>● &lt;좌 동&gt;</li> <li>● &lt;좌 동&gt;</li> <li>- 인증 신청품목이 <u>원산지간이확인 물품</u>에 해당하는 경우 <u>국내제조 확인서</u>로 대체 가능</li> </ul>

- **【기대효과】**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빙 절차 간소화로 FTA 활용편의 제고
- **【시행일】** '22. 1. 1. 시행(「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0조제1항제4호나목 신설,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 단서 신설)

※ 원산지간이확인물품 이란?

- 의의 : 제조공정의 특성상 국내에서 제조·가공한 사실만으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어 관세청장이 고시한 293개 물품
- 근거 :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2의2
- 품목 수 : 293개(HSK 10단위)
- 적용협정 : 품목별로 특정 협정에 적용  
(발효중인 18협정 전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님)

<유의사항>

1. 동 별표의 품목번호, 품명 등은 원산지간이확인물품 여부를 확인하는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며, 기타 목적(예: 품목분류 확인 등)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.
2.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물품 또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물품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산지간이확인 물품에서 제외합니다.
  - 가. 국내에서 반제품 및 블랭크를 이용하여 제조·가공하거나, 국내에서 수행된 공정이 해당 협정에서 정하는 불인정 공정에 해당하는 경우
  - 나. 동 별표에서 정한 국내 필수 공정이 수행되지 않았거나, 비고란의 적용 제외 공정에 해당하는 경우
  - 다. 간이확인을 적용하고자 하는 물품의 품목번호(HSK)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

## 14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 신청 시 사본 제출 허용

(국제협력총괄과, 042-481-3215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<p><input type="checkbox"/>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 신청 시 제출서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정정발급 신청서</li> <li>• 정정사유 입증 서류</li> <li>• 원산지증명서 원본</li> </ul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 신청 시 제출서류 <u>간소화</u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&lt; 좌 동 &gt;</li> <li>• &lt; 좌 동 &gt;</li> <li>• 원산지증명서 원본. <u>다만, 정정발급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본 제출 조건으로 사본 제출 가능</u></li> </ul>

- **【기대효과】** 정정발급 이후 원본을 사후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원산지증명서 원본 회수 지연 등에 따른 기업 불편 해소
- **【시행일】** '22. 1. 1. 시행(「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0조제9항제2호가목 개정)

## 15 원산지 간편인정 대상 서류 및 품목 확대

(국제협력총괄과, 042-481-3215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<p>□ 관세청장이 원산지(포괄)확인서로 인정(원산지 간편인정)하는 서류 및 품목 지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원산지 간편인정 서류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증 등 16종</li> <li>- &lt;신 설&gt;</li> <li>- &lt;신 설&gt;</li> </ul> </li> <li>• 원산지 간편인정 품목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농산물: 1,028개 품목 / 수산물: 81개 품목 / 축산물: 5개 품목 / 지역특산품 47개 품목</li> <li>- <u>전통식품 32개 품목</u></li> </ul> </li> </ul>	<p>□ 원산지 간편인정 적용 대상 <u>서류 및 품목 확대</u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&lt;좌 동&gt;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&lt;좌 동&gt;</li> <li>- <u>우수천일염인증서</u></li> <li>- <u>먹는샘물 제조업 허가증</u></li> </ul> </li> <li>- &lt;좌 동&gt;</li> <li>- <u>식품류 38개 품목</u></li> <li>* 천일염, 먹는샘물 및 고구마말랭이 등 전통식품 5개 품목 신규 지정</li> </ul>

○ **【기대효과】** 원산지 간편인정 서류 및 품목 확대로 원산지증빙이 어려운 농축수산물 생산자 등의 FTA 활용 편의 제고

○ **【시행일】** '22. 1. 1. 시행(「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(포괄)확인서 고시」 개정)

## 16 자유무역지역 내 관세법 적용 근거 마련

(보세산업지원과, 042-481-7821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<p>□ 자유무역지역에서 「관세법」을 적용하는 경우</p> <p>- 자유무역지역에 통제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</p>	<p>□ 자유무역지역에서 「관세법」을 적용하는 경우를 <u>추가</u></p> <p>- &lt; 좌 동 &gt;</p> <p>- <u>입출항 및 하역 절차 등 통관을 위하여 필수적인 절차가 「자유무역지역법」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</u></p> <p>- <u>물품의 통관에 관하여 「자유무역지역법」보다 「관세법」을 적용하는 것이 입주기업체에 유리한 경우</u></p>

- **【기대효과】** 자유무역지역내 법 적용 공백 해소 및 「관세법」상 특례 절차를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에 적용 가능
- **【시행일】** '21. 12. 28. 시행(「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3조 개정)

작 성 자

- 투자종합상담실 관세청 파견관 이명찬

KOTRA자료 22-082

## 외국인투자 관련 관세정책 동향

2022년 2분기

발 행 인 | 유 정 열  
발 행 처 | KOTRA  
발 행 일 | 2022년 7월  
주 소 |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(06792)  
전 화 | 02-1600-7119(대표)  
홈페이지 | [www.kotra.or.kr](http://www.kotra.or.kr)  
문 의 처 | 투자종합상담실  
(02-3497-1061)  
I S B N | 979-11-402-0348-2 (95320)



Copyright © 2022 by KOTRA. All rights reserved.

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.